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

2022. 9. 22.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세계 5대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중견기업과의 기술협업 및 주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2017년 2월부터 「서울창업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창업허브 공덕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시설규모	연면적 24,142㎡(본관 지상10층 18,490/ 별관 지상4층 5,692)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보육 특화공간, 공유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6,091백만원(20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6. 6. : 제26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7. 2.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 2020. 1. : 제298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022. 6.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7.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의결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는 국내외 대기업 및 협력 기관 등과 함께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
- 특히 기술창업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선발 및 보육지원
- 핵심 및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특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
- 혁신기술 매칭,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

○ 해외시장 검증 및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 혁신기술 수요발굴 및 기술실증, 현지화 지원 및 해외거점 확보

○ 서울 온라인 창업생태계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 국내외 주요 도시별 창업생태계 분석 및 우수 창업정책 연구
○ 서울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 사업성과 등 국내외 홍보
○ 서울창업허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7.20. 개최) 심의 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2016.6.) 6년이 경과[1]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서울창업허브 공덕 현황

○ 서울창업허브 공덕(이하 “공덕허브”)은 세계 5대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창업기업 선발·보육, 스타트업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등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덕허브는 147개의 입주공간(기업106개, 파트너스 41개)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요식업 분야 메뉴 개발과 실험 판매를 지원하는 키친인큐베이터 등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공덕허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단서,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관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덕허브 현황>

	○위　　치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24,142㎡) ○개 관 일 : 2017. 6. ○공간구성 : 입주공간 147개실, 코워킹 스페이스, 제품화지원센터 등 ○'22년예산 : 16,091백만원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위탁기간 : 2020. 1. 1. ~ 2022.12.31. ○운영인력 : 23명(센터장1, 팀장1, 직원20) ○주요사무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 특히 공덕허브는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거점시설로 오픈이노베이션[2]을 통한 대·중견기업 기술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매칭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 등 창업지원 시설의 해외거점 마련으로 국내 기업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음.

< 글로벌 현지 거점 추진 현황 >

ㅇ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21. 5월 거점 활용 시작)**
- 위　　치: 베트남 호치민시 국립스타트업센터 3층
- 규　　모: 연면적 1,758㎡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등)
- 운영방식: (공간지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남부지청 무상 지원, (운영) 공동 운영

ㅇ **서울창업허브 벵갈루루 (인도, '22년 하반기 거점 활용 예정)**
- 위　　치: 인도 벵갈루루 The Gain 빌딩(Datta Prabhas, JP Nagar Bengaluru)
- 규　　모: 공용 사무공간 36좌석, 회의공간 2실, 교육공간 1실 등
- 운영방식: (공간지원) 인도현지 협력기관 'The Gain' 공간 무상 지원
  (운　　영) 'The Gain' 서울창업허브 공동 운영

---

2)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윈윈 동반성장 모델로써 이들의 기술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매칭해 스타트업을 확장시키고 있음.
- 공덕허브 오픈이노베이션 성과(2017~2021년)20개 대·중견기업과 91개 스타트업, 기술제휴 100건, 투자유치 20건(91억원)

- 해외 정부기관과 연계한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78개사, 2019.3.~2022.6.기준)하고, 현지법인 설립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대기업과 공동 엑셀러레이팅[3]을 진행하고 있음(첨부자료<1>).

○ 또한, 해외 수요처가 요청하는 기술·제품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현지에서 직접 기술검증과 상용화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PoC[4](해외시장 검증) 사업을 추진 중임.

- 지난해부터 글로벌 PoC 사업을 통해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수요처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제품 기술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PoC 추진 사례 >

▸ 美 크라우드 펀딩 社 (킥스타터, 인디고고)활용 3개사 시장성 검증('21.6월~'22.2월)
<대표사례>반려견 산책용 텀블러(팻투데이), 플라즈마 살균 컵 홀더(뉴디아) 등
▸ 스페인 글로리아스 쇼핑몰, 리야 쇼핑몰 등 12개사 해외 실증
('21.6월~'22.4월, 연말까지 추가운영 후 조건부 상용화 예정)
<대표사례> 안경 없이 모바일 폰으로 AR체험(더블미), 모션캡쳐 키오스크(명지코리아)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0개사 실증 추진 중('21.6월~'22.10월)
<대표사례>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케이크랩스, 인도네시아)

3) 창업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해 회사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창업 지식이나 시장 접근법 등을 알려주거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Proof of Concept(개념증명): 해당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효용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관련 기술, 제품 등의 수요기술 검증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현지화가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공덕허브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2022.12.31.)이 도래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에 공덕허브의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 공덕허브의 주요 사무는 ▸입주기업 선발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 ▸해외시장 검증과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스타트업 진출 지원 등으로 창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 등이 요구됨.

○ 따라서 서울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의 수탁 운영을 통해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 공덕허브 개관 이후 민간위탁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4,724억원, 신규 고용창출 4,257명, 투자유치 3,683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와 투자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공덕허브 기업육성 성과(2017~2021년)>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주기업(수)	858	125	228	214	163	128
투자유치(백만원)	368,839	8,750	20,060	72,589	125,140	142,300
기업매출(백만원)	472,376	10,770	31,420	56,486	181,300	192,400
신규고용(명)	4,257	331	618	765	1,154	1,389

○ 한편,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세 곳(공덕, 성수, 창동) 모두를 개관 시점부터 신규 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sba에게 장기간 위탁하는 등 창업허브 사업에 대한 sba 의존도가 높음.

< 서울창업허브 민간위탁 경위 >

	창업허브 공덕	창업허브 성수	창업허브 창동
개 관 일	2017.6.	2011.7.	2021.3.
민간위탁경위	(신규)'17.2.~'19.12. (재계약)'20.1.~'22.12.	(신규)'11.2.~'12.12. (재계약)'13.1.~'15.7. (재계약)'15.7.~'17.12. (재계약)'18.1.~'20.12. (재계약)'21.1.~'22.12.	(신규)'20.5.~'22.10. - 현재 sba와 재계약 추진 중
최초계약	공개모집	단독입찰후 수의계약	공개모집

○ sba가 보유한 창업보육 기술, 네트워크, 인력 등이 안정적인 창업허브 운영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연례적인 위탁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sba 고유사업 전환이나 대행 등 본질적인 운영방식의 변경이 요구됨.

첨부자료⟨1⟩ 해외현지 법인화 현황 (78개사, '19년~)

○ 진출국가: 베트남 52개, 중국 10개, 싱가포르 9개, 인도 3개, 일본 2개, 미국·인도네시아 각 1개

○ 법인형태: 합작법인(조인트벤처) 33개, 현지법인 45개

구분	기업명	진출국가	기술분야	법인형태	설립연도
1	주식회사 코코넛사일로	베트남	모빌리티	현지법인	2021
2	㈜메사쿠어컴퍼니	베트남	AI	현지법인	
3	VODA	베트남	AI	현지법인	
4	오버플로우	베트남	에듀테크	현지법인	
5	마켓브릿지	베트남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6	블루윙모터스	베트남	모빌리티	현지법인	
7	마린이노베이션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8	리하베스트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9	픽셀로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10	㈜모이기술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11	㈜마이띵스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12	하늘그네터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13	㈜비디오몬스터	베트남	커머스	현지법인	
14	생활한방연구소	베트남	커머스	현지법인	
15	잇더컴퍼니	베트남	커머스	현지법인	
16	와바다다㈜	베트남	제조	현지법인	
17	원더무브㈜	베트남	AI	현지법인	
18	브이케이프론티어㈜	베트남	바이오	합작법인	2020
19	㈜살랑코리아	베트남	에듀테크	합작법인	
20	㈜엘리스	베트남	에듀테크	합작법인	
21	㈜앱닥터	베트남	AI	합작법인	
22	㈜디케이에코팜	베트남	IoT	합작법인	
23	㈜생각기법연구소	베트남	미디어	합작법인	
24	㈜웨인힐스벤처스	베트남	AI	합작법인	
25	㈜ 인터마인즈	베트남	AI, 커머스	합작법인	
26	알레시오㈜	베트남	바이오, AI	합작법인	
27	㈜크라우드웍스	베트남	SaaS	합작법인	
28	다온(DAON)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구분	기업명	진출국가	기술분야	법인형태	설립연도
29	㈜심플그로우	베트남	스마트팜	합작법인	2020
30	아이오푸드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31	㈜에이르랩	베트남	바이오	합작법인	
32	㈜시소앤팜토리	베트남	바이오	합작법인	
33	㈜지원파트너스	베트남	AI, 커머스	합작법인	
34	㈜올핀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35	㈜버닝브로스	베트남	미디어, 마케팅	합작법인	
36	DMZ천년꽃차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37	㈜붐코커뮤니케이션	베트남	미디어, 에듀테크	합작법인	
38	㈜날아오름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39	㈜바르도아이스크림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40	한국통합민원센터	베트남	미디어, 마케팅	합작법인	
41	미디어스코프	베트남	미디어, 마케팅	합작법인	
42	팀블랙버드㈜	싱가포르	AI	현지법인	
43	㈜브레인콜라	싱가포르	SaaS	현지법인	
44	비씨랩스㈜	싱가포르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45	㈜인덱스마인	싱가포르	FinTech	현지법인	
46	㈜하이브랩	싱가포르	FinTech	현지법인	
47	㈜캐시멜로	싱가포르	FinTech	현지법인	
48	㈜풀스텍	싱가포르	FinTech	현지법인	
49	㈜한국어음중개	싱가포르	FinTech	현지법인	
50	퍼블리시㈜	싱가포르	미디어	현지법인	
51	4SMapper	중국	AI	현지법인	
52	로프	중국	AI	현지법인	
53	이온스파	중국	제조	현지법인	
54	데니어	중국	AI, 바이오	현지법인	
55	KDFG	중국	커머스	현지법인	
56	코코너사일로	중국	빅데이어, 커머스	현지법인	
57	민영 코퍼레이션	인도	제조	현지법인	
58	CM WHITE	인도	바이오	현지법인	
59	해우GLS로지스틱스	인도	미디어	현지법인	
60	㈜쏠앤텍	미국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61	다모고	인도네시아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구분	기업명	진출국가	기술분야	법인형태	설립연도
62	라잇트리	일본	제조	현지법인	2020
63	㈜뷰티더라이브	중국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2019
64	㈜생각기법연구소	중국	에듀테크	현지법인	
65	씨제이인스트루먼트㈜	중국	IT, 커머스	현지법인	
66	㈜테서	중국	바이오	현지법인	
67	㈜어반베이스	일본	AR, VR	현지법인	
68	㈜고미코퍼레이션	베트남	미디어, 커머스	합작법인	
69	퓨처푸드랩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70	㈜레드테이블	베트남	관광업, 커머스	합작법인	
71	INCUHUB	베트남	AR, VR	합작법인	
72	㈜라이프온코리아	베트남	미디어, 커머스	현지법인	
73	㈜엠테이크	베트남	제조	합작법인	
74	㈜퍼밋	베트남	스마트팜	합작법인	
75	㈜휴먼톡톡	베트남	에듀테크	현지법인	
76	㈜에이엔티홀딩스	베트남	바이오	합작법인	
77	㈜엠케이	베트남	모빌리티	합작법인	
78	엄마손꾸러미영농조합법인	베트남	바이오, 푸드테크	합작법인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73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세계 5대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중견기업과의 기술협업 및 주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2017년 2월부터 「서울창업허브 공덕」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창업허브 공덕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시설규모	연면적 24,142㎡(본관 지상10층 18,490/ 별관 지상4층 5,692)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보육 특화공간, 공유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6,091백만원('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6. 6. : 제26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7. 2.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 2020. 1. : 제298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022. 6.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7.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 의결(동의)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는 국내외 대기업 및 협력 기관 등과 함께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
- 특히 기술창업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선발 및 보육지원
- 핵심 및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특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

- 혁신기술 매칭,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

○ 해외시장 검증 및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 혁신기술 수요발굴 및 기술실증, 현지화 지원 및 해외거점 확보

○ 서울 온라인 창업생태계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 국내외 주요 도시별 창업생태계 분석 및 우수 창업정책 연구

○ 서울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 사업성과 등 국내외 홍보

○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 7. 20.)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창업정책과 창업정책팀 김경진 (☎ 2133-4751)
이재현 (☎ 2133-4755)